

# 인도의 工業所有權制度



文 秉 岩

〈 辨 理 士 〉

## ① 概 要

인도의 工業所有權 制度는 約 120년의 長 歷史를 가 지고 있다.

이를 管掌하는 機構로서는 特許·意匠·商標登錄局 이 Bombay 에 있으며 이는 特許·意匠部門과 商標部門 으로 구분되어 印度全國을 몇개의 地區로 나누어 Head Office 와 Branch Office 를 두고 있다.

특허·의장은 工業都市인 Calcutta Head Office 가 있 고 Bombay 와 Madras 에 Branch Office 가 있다. 상표에 있어서는 商業의 中心地 Bombay 에 Head Office 가 있 으며 Branch Office 는 Calcutta, Madras, Delhi 의 3都市 에 各各 設置하고 있다. Head Office 에서는 出願의 受 理와 審査를 행하고 Branch Office 에서는 출원의 수리 가 主된 業務로 되어 있다.

現在の 登錄局長(Controller-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은 Dr. S. Vedaraman 이다(註:筆者가 數年前 泰國에서 열린 WIPO 主體의 “工業所有權에 관 한 세미나”에서 印度代表로 參席한 그와 만난후 계속 交分을 맺어 오고 있으며 本稿에 그로부터 얻은 資料 를 參考하였다).

定員은 約 300名이나 實際人員은 250명 정도이고 특 히 審査官에 있어서는 정원의 半數에 불과하고 심사관 으로 採用함에 있어서 높은 技術的知識을 가진 엔지니어가 不足한 現狀이다.

## ② 特許制度

### 1. 制度의 沿革

인도의 特許制度의 起源은 1865年으로 거슬러 올라 가는 長 歷史를 가진다. 그후 廢止되고 새로 誕生되는 등 여러차례의 개정 이 있었고 現行法인 The Patent Act, 1970이 制定된 政治的, 經濟的 理由로서……

① 출원 및 등록건수에 있어서 內國人보다 外國人이 壓倒的으로 많고 均衡上 印度에 全的으로 不利하였다.

數字는 낮은 것이나 1965년부터 1970년까지 6年까지의 全出願件數 32,567件中 外國人의 출원건수가 무려 81%를 占하고 印度人이 取得한 有效한 특허(1958年 1月 1日)는 1,157건인데 대하여 12,596건이 外國인이다.

② 外國人特許權者는 단지 他人이 物品을 製造하는 것을 防止하거나 自國의 物품에 대한 安全한 市場確保 만을 위해서 특허를 이용하고 있었다.

③ 특허에 關係된 物품을 제조하는 것은 外國이고 印度國內가 아니었기때문에 인도국내에서의 가격은 높은 輸入關稅를 무릅쓰게 되어 消費者에게 不利한 것이 였다.

즉, 1911년의 特許 및 意匠法은 實質上 當時의 英國 法律의 複寫版이었고 1947年 印度獨立後에도 英國制의 特許법은 外國인에 의한 經濟的인 搾取手段으로서 特許법의 目的인 自國産業의 成長을 促進하는 效果를 잃어버린 것으로 理解되어 왔다.

### 2. 1970年 特許法과 1911年 特許法 및 意匠法과의 相違點

① 現行法에서는 特許要件 및 不特許事由를 詳細히 規定하였다.

② 現行法에서는 食品, 醫藥品 및 化學的方法에 의하 여 제조되는 物質을 제조하기 위한 method 또는 process 만이 특허되며 舊法과 달리 products 그 自體는 특허되 지 아니한다.

③ 殺虫劑, 殺菌劑, 除草製 및 農藥도 不特許事由가 된다.

④ 權利期間은 16년에서 14년으로 단축되었다.

⑤ 不實施에 의한 強制實施許諾이나 取消 또는 實施 許諾用意(Licence of right)의 規定이 新設되었다.

### 3. 1970年 特許法의 概要

① 出願節次—1發明 1出願主義採用

② 特許의 種類

(1) Ordinary Patent.

(2) Priority Patent

(3) Addition Patent

(4) Secret Patent

③ 特許의 要件

新規하고 有用性을 가진 다음의 發明은 특허된다.

- (1) art, process, method or manner of manufacture
- (2) machine, apparatus or other article
- (3) Substance produced by manufacture
- (4) improvement of any of them

④ 特許될 수 없는 것

- (1) 自然法則 및 公序良俗에 反하는 것
- (2) 科學의原理, 抽象的理論인 公式의 單純한 發見
- (3) 公知物質의 性質, 用途의 單純한 발견
- (4) 단순한 混合에 의하여 얻어진 물질
- (5) 공지한 裝置의 配置, 再配列
- (6) 農藝, 園藝의 方法
- (7) 人體의 治療에 관한 工程 및 動植物의 處置에 관한 工程
- (8) 原子力에 관한 發明
- (9) 食品, 醫藥으로 使用되는 物質
- (10) 化學의 工程에 의하여 제조되는 物質(合金, 光學유리, 半導體, 金屬間化合物, 다만(9), (10)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및 방법은 특허된다.

⑤ 審査의 概要

(1) 特許局長은 심사관에게 심사 보고서의 作成을 命하고 심사관은 18個月 以內에 提出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新規性

明細書의 登錄請求範圍에 記載된 發明이 인도에 있어서 公知, 公用 또는 인도나 외국에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것은 특허되지 아니한다.

(3) 進歩性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前記의 것과 比較하여 進歩性이 있는 것은 특허된다.

(4) 産業上 利用할 수 있는 것

(5) 異議申請은 公報揭載日로부터 4개월 이내

⑥ 不實施에 의한 強制實施許諾 및 取消

(1) 특허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上記期間後, 利害關係人은 局長에 대하여 발명이 公知의 妥當한 要請에 合致되지 않고 있다거나 合理的인 가격으로 公공을 위하여 寄與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출하여 그에 대한 강제실시의 허락은 청구할 수가 있다.

(3) 政府 또는 利害關係人은 強制實施許諾을 주도록 命命한 날로부터 2年後 또는 실시허락동의의 裏書를 한 날로부터 2년후는 앞의 (2)와 같은 이유로서 특허의

취소를 局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⑦ 政府에 의한 發明의 實施

特許權의 侵害가 될 수 없는 경우란……

(1) 특허에 관계되는 기계, 장치, 그외의 물품 또는 방법의 사용에 의하여 生産된 물품을 全的으로 政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政府에 의해서 輸入하는 것

(2) 前記 (1)에 관한 공정을 政府自體 또는 政府를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

(3) 學生의 教授用으로서 實驗 또는 研究를 위하여 生産, 사용하는 것

(4) 政府에 의하여 運營되는 診療所, 病院 그 외의 醫療機關 또는 政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配布하기 위하여 의약을 수입하는 경우.

③ 商標制度

1. 制度의 沿革

1889년부터 시작하여 數次的 개정을 거쳐 現行法인 1958年 商標 및 商品標法 (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은 상표법과 상품표법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2. 1958年 商標法 및 商品標法의 概要

① 登錄出願節次

상품의 各類別마다 출원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商品分類는 國際分類와 같이 하고 있다.

② 登錄할 수 있는 標章

登錄簿는 A部 및 B部로 區分되어 이의 登錄要件은 거의 英國法과 같다. A部登錄要件은 自己가 去來 또는 去來하고자 하는 상품과 他商品과를 區別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識別力을 갖출 필요가 있다.

(1) 特色있는 樣態로 나타낸 會社, 個人 또는 商會의 名稱

(2) 出願人 또는 그 營業의 前權利者의 署名

(3) 創作된 言語

(4) 상품의 품질 또는 品位와 直接 關係가 없는 言語로서 普通으로 사용되는 意味의 地名, 姓, 또는 種族의 명칭이 아닌 것

(5) 其他 特別顯著한 標章

③ 不登錄事由

(1) 그의 사용이 타인을 欺瞞하거나 混同을 일으킬 虞려가 있는 표장

(2) 그의 사용이 法律에 違反하는 표장

(3) 醜惡 또는 猥褻한 것이 되거나 그와 같은 것을 포함한 표장

(4) 印度國民의 如何한 階級 또는 黨派의 宗教感情을 損傷시키는 事項에서 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을 포함한 표장

(5) 裁判에서 保護를 받을 權利를 빼앗긴 표장

(6) 트라스트의 明示的, 默示的 또는 推定的表示

(7) 善意的 同時的 使用 또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同一의 商標 또는 類似한 商標에 관하여 타인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었거나 등록출원중의 商標와 동일 또는 타인을 기만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

(8) 單一의 化學的 要素 또는 單一化, 合物的 명칭으로서 通常 使用되는 말을 化學物質 또는 化學調合物에 관한 商標로서 사용하는 경우

(9) 一國의 象徴, 國際聯合의 명칭으로된 표장

(10) 現存하는 者의 姓名, 또는 肖像을 포함한 표장은 등록되기전에 그의 同意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最近 死亡한 자의 姓名 또는 초상을 포함한 표장은 故人의 法律上 代理人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商標法에 의한 保護對象

(1) 商標과 權利자와의 結合關係를 表示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圖形, 라벨, 姓名, 署名, 文字, 數字, 칼라 또는 이들의 結合

(2) 서어비스·마아크는 保護對象이 안되고 또 平面의 標章만으로서 立體標章은 보호되지 아니 한다.

⑤ 審査節次

(1) 登錄官은 出願商標와 동일 또는 타인을 기만할 만큼 유사한 商標의 同一商品類에 등록여부를 確認하기 위하여 등록상표 및 심사중의 출원을 調査한다.

(2) 登錄官이 登錄査定하는데 異議가 있어 이에 어떤 條件이나 修正 또는 制度에 따른 것을 提案하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書面으로 通知한다.

(3) 指定期間인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통지에 따라 출원을 수정하거나 意見을 제출하게 되고 萬若 hearing (聽聞, 意見書)을 申請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拋棄한 것으로 看做된다.

(4) 拒絕査定에 대한 不服은 3개월 이내에 高等法院에 抗告할 수 있다.

(5) 등록사정은 상표저어널(Trade Marks Journal)에 公告되고 異議申請은 公告日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⑥ 商標權의 存續期間 및 更新

(1) 權利의 존속기간은 出願日로부터 7년간

(2) 갱신은 등록期間消滅前 6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3) 不更新으로 因하여 소멸된 商標는 등록관이 타

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을 回復할 수 있다.

⑦ 商標權의 効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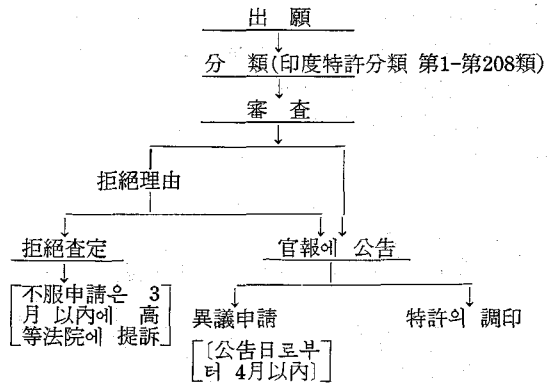
(1) 商標權은 使用에 依하여 發生하며 등록은 權利를 推定하는 一應의 證據에 지나지 않는다.

(2) 商標權의 侵害 및 passing off에 관해서는 刑事上의 責任을 追求하기 爲하여 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註: [英] 不正競爭, 詐稱通用—자기의 商標이나 營業를 타인 의 商標나 營業처럼 보이게 하여[pretense] 一般人에게 誤認시키는 不法行爲. 例를 들면 英國에 있어서는 商標를 「포도酒」에 대하여 등록한 경우에 第3者가 「麥酒」에 대하여 그 商標를 使用한 경우는 침해는 成立하지 않으나 passing off의 訴를 提起할 수가 있다)

⑧ 商標權의 讓渡 및 使用許諾

등록商標는 營業(good will)과 함께 또는 分離하여 讓渡하거나 移轉할 수 있다.

特許出願에서 登錄까지의 節次



商標出願에서 登錄까지의 節次

